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9
--------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
제출자 : 달성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
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
필요한 연서 주민의 최소연령이 「20세」에서 「19세」로 하향조정
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당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200
명을 이상으로 한다

4. 개정조례안

- 감사청구 주민의 수 - "20세 이상 주민 200명"에서 "19세 이상
주민 200명 이상"으로 한다. (안제2조)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4(주민의 감사청구)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다. 입법예고기간 : 2007.1.29 ~ 2.17(20일간)
- 라. 예산수반사항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200명”을 “주민의 수는 19세이상
주민의 200명”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 수)</p> <p>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의 수)</p> <p>주민의 19세이상 주민의 200명</p>